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534 발의연월일: 2025. 4. 1

발 의 자 : 임미애・이소영・박지혜

김원이 · 오기형 · 서미화

허성무 • 박정현 • 허 영

박지원・김 윤・임호선

이강일 · 송옥주 · 이병진

위성곤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는 정부가 공공기관 등의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장려하도록 하는 규정이 담겨 있음. 이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는 저수지 등 수리시설 유휴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하지만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재생에너지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한국농어촌공사는 자체 정관규정에만 근거해서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한편 최근 지역주민 이익보다 기업이익 위주로 농촌태양광 발전사업이 운영되는 것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주민참여형 · 공공주도형 영농형태양광 발전시설 보급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 히 이루어지고 있음. 주민참여 중심의 영농형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 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및 지역농협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이에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현행법의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한국농어촌공사의 재생에너지 사업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뿐만 아니라 농촌 영농 주민소득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함(안 제10조).

법률 제 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4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4 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제10조(사업) ①		
호의 사업을 한다.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u><신 설></u>	1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신ㆍ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		
<u>14</u> . ~ <u>16</u> . (생 략)	<u>15</u> . ~ <u>17</u> . (현행 제14호부터 제		
	16호까지와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